

## 大田直轄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26
----------	-----

提出年月日 : '94. 5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公務員의 私的 國外旅行을 自律化하고, 在外公務員의 服務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는 等 地方公務員의 服務에 關하여 現實과 맞지 아니하거나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年間 7日以上의 年暇는 2回以上 分割하여 實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私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全年暇日數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고, 所屬自治團體長에의 旅行 申告制度를 廢止함. (案 第19條 第2項 및 第26條의 2)
- 地方公務員 國外派遣勤務를 할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게 適用되는 在外公務員服務規程을 準用하도록 하고, 在外公館長에게 派遣公務員의 服務監督權을 委託할수 있도록 함.(案 第10條 第3項)
- 昇進·轉職試驗에 應試할 때에는 이에 직접 必要한 期間에 대하여 公暇를 許可하도록 함.(案 第22條 第4號)
- 兄弟姉妹 結婚時, 兄弟姉妹 또는 伯叔父母 死亡時 및 兄弟姉妹 服喪時 부여되는 特別休暇를 配偶者側의 兄弟姉妹 및 伯叔父母의 慶弔事時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案 別表 3)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 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 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를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2중 “직할시장에게 신고하고” 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 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 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파견근무) ①-② (생략) <u>〈신 설〉</u>	제10조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u>
제18조 (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제18조 (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u> -----

현 행		개 정 안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5년이상	20일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u>특별한 사유가 있는</u>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u>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u>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필요한 기간</u>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3. (생략) <u>〈신설〉</u> 4. (생략)</p>	<p>제22조(공가) ----- ----- -----<u>이에 직접 필요</u> <u>한 기간</u> -----.</p> <p>1. -3. (현행과 같음) 4. <u>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u> 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u>직할시</u> <u>장에게 신고하고</u> 공무 외의 목적 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6조의 2(국외여행) ----- -----<u>공무 외의</u> <u>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u>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7
	자녀	1		자녀	1
	<u>형제자매</u>	1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처)	1	출산	배우자(처)	1
사망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3		자녀	3
	<u>형제자매</u>	3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3
	<u>백숙부모</u>	3		<u>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u>	3
탈상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u>형제자매</u>	1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大田直轄市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查報告

1994年 5月 20日

内務委員會

### I. 審查經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5月 17日 大田直轄市長
2. 回附日字 : 1994年 5月 17日
3. 上程日字 : 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内務委員會 (1994. 5. 20)

上程, 審議, 原案可決

### II.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内務局長)

#### 1. 提案理由

公務員의 私的 國外旅行을 自律화하고, 在外公務員의 服務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는等 地方公務員의 服務에 關하여 現實과 맞지 아니  
하거나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年間 7日以上의 年暇는 2回以上 分割하여 實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私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全年暇 日數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고, 所屬自治團體長에의 旅行申告制度를  
廢止함. (案 第19條 第2項 및 第26條의 2)

- 地方公務員 國外派遣勤務를 할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게 適用  
되는 在外公務員 服務規程을 準用하도록 하고, 在外公館長에게  
派遣公務員의 服務監督權을 委託할수 있도록 함.  
(案 第10條 第3項)
- 昇進·轉職試驗에 應試할 때에는 이에 직접 必要한 期間에 대  
하여 公暇를 許可하도록 함. (案 第22條 第4號)
- 兄弟姊妹 結婚時, 兄弟姊妹 또는 伯叔父母 死亡時 및 兄弟姊妹  
脫喪時 부여되는 特別休暇를 配偶者側의 兄弟姊妹 및 伯叔父母  
의 慶弔事時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案 別表 3)

### III. 專門委員 檢討要旨 (專門委員 : 韓連東)

本案件은 公務員들에 대한 私的 國外旅行을 自律化하고, 在外公  
務員의 服務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는등 地方公務員의 服務事項을  
改善, 補完하려는 内容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年間 公務員의 7日以上 年暇는 2回以上 分割하여 實施하던  
것을 私的으로 國外流行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全年暇 日數를 使用  
할 수 있도록 하고 所屬長에 대한 旅行申告制度를 廢止하였음.  
(案 第19條 第2項, 第26條의 2)

둘째, 地方公務員이 國外派遣勤務를 할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게 適用되는 在外公務員 服務規程을 準用토록 하였음.

(案 第10條 第3項)

셋째, 昇進·轉職試險에 應試할 경우는 이에 必要한 實기간에 대하여 公暇를 許可토록 함. (案 第22條 第4號)

넷째, 公務員의 特別休暇 對象에 있어서 本人의 兄弟姊妹, 伯叔父母의 경우 이를 配偶者 兄弟姊妹, 伯叔父母까지로 擴大하여 慶弔事時 休暇를 갈 수 있도록 하였음. (案 別表 3)

本 改正案은 公務員의 休暇制度中 現實과 맞지 않거나 不合理的 事項을 改善, 補完하여 公務員의 士氣振作을 圖謀하고 服務管理體系를 確立하려는 内容으로써 지난 5月 16日 關聯 公務員 服務 規程이] 改正됨에 따라 改善하는 것이라 하겠음.

#### IV. 討 論 要 旨 : 省 略

####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 VI. 審 查 結 果 : 原案可決